

신 구 대 비 표

■ 교직원복무규정

현행	개정(안)	사유
<p>제18조(연차휴가) ① 직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하며, 당해연도 미사용 휴가일수의 10일 까지를 차기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1)</p> <p>② 직원은 차기연도 휴가 일수의 3일까지를 당해 연도 휴가에 포함하여 조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근속 20년 이상 직원의 경우에는 조기 사용 기간을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3.1)</p> <p>③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원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만 차기연도 휴가를 조기 사용할 수 있다.</p> <p>④ 각 부서장은 직원의 휴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p>	<p>제18조(연차휴가)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 한다</p> <p>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p> <p>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p> <p>3.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호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p> <p>4.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호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p> <p>② 각 부서장은 직원의 휴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 되지 않도록 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p> <p>③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팀장(부서장)의 승인하에 선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 휴가) 준수를 위한 문구 반영</p>
<p>제21조의 2(산전·산후휴가) ① 임신중인 여성 교직원은 산전·산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보호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p> <p>② 임신중인 여성 교직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교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 휴가를 주어야 한다</p>	<p>제22조(산전·산후휴가) ①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②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p>	<p>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준수를 위한 문구 반영</p>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 교직원이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임신한 여성 교직원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p>허용 한다</p> <p>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p> <p>⑧ 임신부의 보호와 관련되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p>	
<p>제21조의3(보건휴가) 여성 교직원이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한다.</p> <p>제21조의4(배우자 출산휴가)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p> <p>제22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제2항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p>	<p>제23조(배우자 출산휴가)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p> <p>제2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교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에 따라 시행한다.</p> <p>제25조(보건휴가) 여성 교직원이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한다.</p> <p>제26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p>	<p>-규정 순서조정 (남녀고용평등법 준용)</p> <p>-제24조 신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한 문구 반영</p>
<p>제24조(사직원) 교직원은 사직의사를 사직예정일로부터 15일전에 직접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하고 7일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제28조(사직원) 교직원은 사직의사를 사직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직접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하고 15일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원활한 인수인계 및 인력운영등을 고려하여 사직 신청 절차 강화를 위한 문구 변경</p>